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 심사보고서

2002. 9. 6. 행정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8월 28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02년 8월 28일 회부

다. 상 정 일 자 : 제90회(제1차정레회) 제4차 행정위원회(2002. 9. 6.) 상정 의결

## 2. 제 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#### 가. 개정이유

ㅇ 행정자치부의 「1·2단계 읍·면·동 기능 전환 보완지침」에 의거 서울특별시영등 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레를 개정하여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기여하 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1) 주민자치센터 운영
  - ㅇ 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일원화(안 제4조제2항)
    -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인식과 목적을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제명과 조례중 "주민복지센터"를 "주민자치센터"로 개정
  - ㅇ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 공무원 부담 완화(안 제7조제2항)
    - ·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 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전담 또는 분담 수행 허용
    - 이와 관련 주민자치위원회는 업무를 담당하는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는 징수한 "수강료"중 일정금액의 봉사활동비 지급 가능
  - ㅇ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구의 지원체계 강화(안 제7조제4항 내지 6항)
    - ·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정책수립, 연구·개발, 협조·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는 구별로 전문가, 관련분야 종사자, 시민·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 단을 구성 운영할 수 있음
  - o 사용료 등의 징수·관리체계 개선(안 제10조제2항 및 제3항, 제6항 및 제7항)
    - 사용료 등은 "사용료"와 "수강료"로 통일하고 징수권자를 명확히 함
      - "사용료"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
    - · "수강료"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
      - ※ 「별표 1」로 사용료 및 수강료 상한선 규정
    - · 동장이 징수하는 "사용료"는 소속공무원을 회계책임자로 지정하여 징수·관리(구 의세입으로 처리)
    -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하는 "수강료"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 센터 운영경비로 사용
  - ㅇ 저소득자 등 일정한 경우 사용료 등의 감면(안 제10조제5항)
    - 구청장은 자치센터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음
      - ※ 「별표 2」로 규정

- ㅇ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안전관리 대책(안 제11조제5항)
  - · 동장은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을 위해 시설보험 등에 가입 가능

#### 2)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· 운영

- 위원수의 하한선 폐지 및 고문제도의 신설(안 제17조제1항, 제18조제3항 및 제21조 제4항)
  - · 종전에는 위원수를 "15~25인 이내"로 하였으나 "25인 이내"로 하한선을 폐지하 여 지역실정에 따른 자율적 구성이 가능토록 하였음
  - ·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·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에서 고문을 둘 수 있 도록 하되,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·구의원은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음
- ㅇ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 확보(안 제17조제2항, 제3항 및 제6항)
  - · 주민자치위원을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하는 방식에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적격자를 위촉하도록 변경
  - · 위원 분포의 균형과 대표성 확보를 위해 어느 한 계층에서 1/3 이상이 위촉되지 않도록 해야 함
  - · 위원 위촉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매년 초 위원 전원의 주요인적사항을 공고·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
  - · 신규 위촉의 경우에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공개
- ㅇ 위원 등의 임기단축으로 주민참여기회 확대(안 제17조제7항)
  - · 위원장, 위원, 당연직이 아닌 고문 등의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여 가급적 많은 주민들의 참여기회 보장
- 위원회의 자율적 역량 제고(안 제10조제2항, 제3항, 제6항 및 제7항, 제16조제1항 및 제3항, 제18조제4항)
  - · 위원회는 심의·자문기관적 성격을 갖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의결·집행기 능 부여
    - "수강료"의 징수범위·요율 등은 위원회가 의결로써 결정
    - "수강료"의 징수·관리·지출 등을 위원회 명의로 수행
    - 위원회 회의 개최시 위원회 명의로 통보 등
- ㅇ 위원회 위원의 자격 및 해촉요건 강화(안 제17조제2항, 제20조제1항)
  - · "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"를 위촉토록 하여 역량 있는 인사의 참여기회를 확대
  - · 해촉요건에 있어서도 "자치센터 운영취지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", "직무를 해태한 경우" 등을 추가
- ㅇ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제고(안 제17조제1항 및 제7항)
  - · 시·구의원의 경우 당연직 고문으로 위촉 가능하도록 하여 주민대표로서의 예우 와 함께 위원회 운영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관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
  - · 위원장의 연임은 계속 연임에서 1회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위원장 계속 연임에 따른 문제점 최소화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김흥수)

행정자치부의 준칙(안)대로 「주민복지센터」의 명칭을 「주민자치센터」로, 「주민복지센터위원회」를 「주민자치위원회」로 개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된 명칭으로 사용하게 되었으며, 동장은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자치위원 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도 자치센터 운영관련 업무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른활동비를 "수강료" 중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(안 제7조), "사용

료"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·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동장이 징수토록 하였고, "수 강료"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써 주민자치위원회가 징수토록 하여 징수권자를 명확 히 하고 사용료 및 수강료의 상한선을 규정하였으며, 이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을 회계책 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(안 제10조), 또한 자치센터 내에서 이용자 등 이 시설장비 하자 등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이 가능토록 조항 등을 신설(안 11조)

다음으로 종전에 위원수를 " $15\sim25$ 인 이내"를 "25인 이내"로 하여 하한선을 폐지 자율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고,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자문·조언 등을 위해 3명 이내의 고문 을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하였고, 당연직 고문으로 기초자치단체 의회 의원이 될 수 있도 록 하였습니다. 또한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하고 연임과 해촉 등 관련사 항을 개정하여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되었다고 판단되며, 아울러 본 조례개정(안) 제17조제1항 중 당연직 고문의 대상인 "시·구의회 의원"이란 표기의 "시의원"은 광역자치단체의 시의원이 아니고 일반 자치단체의 "시의원"을 말함으로 해석 상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"시·구의회 의원"을 "구의회 의원"으로 수정 의결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됨.

## 4. 수정안 요지

#### 가. 수정요지

ㅇ 본 조례 제17조(구성 등)1항의 자치위원수를 종전과 같이 수정하고, 본 조항의 고 문의 수를 조정하여 다수 고문으로 인한 조직 의사결정 과정의 저해요인을 사전 예 방하고자 하였으며, 또한 고문의 대상자인 "시ㆍ구의회 의원"이란 표기의 "시의원" 은 광역자치단체의 시의원이 아닌 일반 자치단체의 "시의원"을 말함으로 해석상의 혼란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수정함.

#### 나. 수정주요골자

o (안) 제17조(구성 등)1항의 내용 중 「25인 이내」를 「15인 이상 25인 이내」로 종전과 같이 수정하고, 「3인 이내의 고문」을 「2인 이내의 고문」으로 수정하며, 또한 「시·구의회 의원」을 「구의회 의원」으로 수정함

#### 5. 심사결과 : 수정안 가결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에대한수정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주민복지센터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(안)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(안) 제17조(구성 등)1항의 "25인 이내"를 "15인 이상 25인 이내"로 종전과 같이 수정하고, "3인 이내의 고문"을 "2인 이내의 고문"으로 수정하며, 또한 "시·구의회 의원"을 "구의회 의원"으로 수정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